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16-927호

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07(2005.10. 6)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된 종로구 충신동 1번지 일대 충신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477 (2007.12.27)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옥인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, 제6호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되었는바, 이에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10월 27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가. 공고기간 : 공고일로 부터 21일간(2016.10.27~2016.11.16)

나. 직권해제 대상구역

명 칭	위 치(면적)	해제이유	근 거
충신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	종로구 충신동 1번지 일대 (29,601.6㎡)	- 조합설립인가 이후 4년내 사업시행 인가 미신청 -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·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』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, 제6호
옥인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	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(30,282.4㎡)	-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·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』 제4조의3 제3항 제6호

다. 위 치 도 : 위치도면 참조(붙임 1,2)

라. 기 타 : 공고와 관련된 의견은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(☎02-2133-7187) 또는 종로구청 주택과(☎(02)2148-2623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 직권해제 대상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치도

○ 종로 충신동 1번지 일대



[붙임2] 직권해제 대상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치도

○ 종로 옥인동 47번지 일대

